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8”을 “284”로,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소방준감 이하 “227”을 “23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6”을 “573”으로, 소방공무원 계 “468”을 “465”로, 소방준감 이하 “466”을 “46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청의 정원은 <u>10</u> 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u>11</u> <u>명</u>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278</u>	<u>284</u>		+6	
소	방	공	·	·	·		
무	원	계	<u>233</u>	<u>239</u>		+6	
		·	·	·	·		
		·	·	·	·		
소	방	준	<u>227</u>	<u>233</u>		+6	
감	이	하	·	·	·		
		·	·	·	·		
		·	·	·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76</u>	• <u>573</u>	-3
소방공무원 계	• <u>468</u>	• <u>465</u>	-3
소방준감 이하	• <u>466</u>	• <u>463</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